

## 보석보증금납입방법변경신청

사 건 명 2000고단 000호 사기

피고인 ○ ○

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20〇〇. 〇. 〇.자 보석보증금 금 〇〇〇원으로 하는 보석허가결정이 있었는바, 피고인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가정형편상 동보증금의 납입이 곤란하므로 동 납입방법을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0년 0월 0일

위 신청인 피고인 ○ ○ (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6	<b>⋛∕∥</b> 대한법률구조공E	ŀ
1		N.C.W.
or.kr/		対性に対

제출법원	사건계속 법원		
신청권자	피고인,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가족, 동 거인, 고용주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94~100조의2, 102~104조의2
기 타	법원이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력 정도와 범죄의 성질,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인바, 피고인등은 법원의보석허가결정이 있은 후 피고인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법원이 정한 보증금납입방법을 변경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수 있음		